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0억원 감액
- 나. 추경으로 감액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< 수입 및 지출 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	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
계	48,481	41,258	△7,223	계	48,481	41,258	△7,223
공공예금 이자수입	801	801	-	비용자성 사업비	15,000	15,000	-
예치금회수	28,471	28,248	△223	예치금	33,381	26,158	△7,223
기타회계 전입금	15,000	8,000	△7,000	기본경비	100	100	-
예탁금 원금회수수입	4,143	4,143	-				
예탁금 이자수입	66	66	-				

○ 수입계획 변경 : 72억 2천 3백만원 감액

- 기타회계 전입금 70억원 감액 : (당초) 150억원 → (변경) 80억원

※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0억원 감액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

- 예치금 회수 2억 2천 3백만원 감액 : (당초) 284억 7천 1백만원
→ (변경) 282억 4천 8백만원

※ 201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 반영

○ 지출계획 변경 : 72억 2천 3백만원 감액

- 예치금 72억 2천 3백만원 감액 : (당초) 333억 8천 1백만원
→ (변경) 261억 5천 8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 김세훈(☎2133-8664)